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1. 19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
과 장 : 김 영 준
사무관 : 김 학 조
전 화 : 500-1810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있음(2P)

이 자료는 2010년 1월 20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어촌주택개량자금 43% 증액, 4000억원 공급

-세대당 융자한도액 5천만원으로 증액, 농어촌주택 8,000세대 개량 지원-

-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 지난해(2,800억원)에 비해 약 43% 증액된 4,000억원 공급된다.
 -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대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융자한도액을 지난해(4천만원)에 비해 25% 증액한 5천만원으로 늘리고, 자금지원 물량도 지난해(7,000세대)보다 1,000세대 늘려 8,000세대를 대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4,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.
-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·불량주택 개량(신축·수리)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리 3%,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장기 저리의 융자금이다.
 -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 면적 100㎡ 이하이며, 전원마을조성사업 지역의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㎡ 이하까지 지원된다.

- 또한,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·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다.
 -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, 주택을 개량(신축·수리)한 후에 관할 농협에 자금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한편,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그동안 농어촌 주택의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 세대별 융자한도액을 대폭 증액하였으며, 앞으로도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

2010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
-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

□ 사업추진근거

- 농어촌정비법 제2조 10호(생활환경정비사업) 및 제55조(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), 제67조(농어촌주택개량자금 조성), 제108조(자금지원)
-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(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)

□ 사업시행주체 : 시장·군수·구청장

□ 지원대상

- 농어촌지역에서 노후·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(무주택자 포함)
-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추천한 자
 - 지원대상 제외지역 : 읍·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,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(洞) 지역 중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

□ 사업내용

- 농어촌 노후·불량주택 개량자금 용자지원
- '10년 사업계획(사업물량, 사업비) : 8,000동, 400,000백만원

□ 용자재원 : 농협자금(280,000백만원), 지방비(120,000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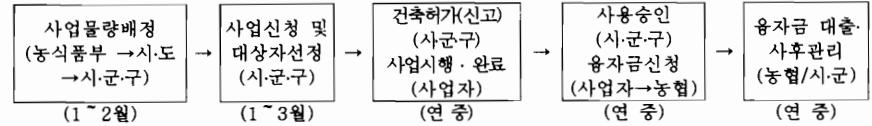
□ 지원조건

- 지원조건 : 연리 3%,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
- 대출한도 : 신축 50백만원/세대, 부분개량 25백만원/세대

□ 대출대상주택

-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㎡ 이하 주택(전원마을조성사업지역의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㎡이하 주택)

□ 사업추진체계



□ 최근 연도별 지원실적

(단위 : 세대, 백만원)

구분	'07년	'08년	'09년	'10년 계획
지원 물량	5,600	6,000	7,000	8,000
세대당 용자한도액	40	40	40	50
자금 공급액	224,000	240,000	280,000	400,000

□ '10년 자금 주요특징

- '10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으로 통합하여 단일자금으로 운용
 - * ('09)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, 농촌주택정비자금 → ('10) 농어촌주택개량자금
- '10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재원을 농협자금과 지방비로 조성
 - * '09년 자금은 국민주택기금, 농특회계, 지방비, 농협자금으로 조성
-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세대별 용자한도액 증액 및 지원물량 확대
 - 세대별 용자한도액(신축기준) : ('09) 40백만원 → ('10) 50백만원
 - 주택개량자금 지원물량 확대 : ('09) 7,000동 → ('10) 8,000동

< 2010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현황 >

(금액단위 : 억원)

2009년 사업			2010년 사업		
자금명	사업물량(사업비)	재원구성	자금명	사업물량(사업비)	재원구성
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	4,500동(1,800)	농특회계(10%) : 180 국민주택기금(60%) : 1080 지방비(30%) : 540	농어촌주택개량자금	8,000동(4,000)	농협자금(70%) : 2,800 지방비(30%) : 1,200
농촌주택정비자금	2,500동(1,000)	농협자금(100%) : 1,000			